

파리協約의 現況과 內容

〈下〉

金 守 東

<特許廳 國際法務官>

一 承 前 一

③ 파리協約의 內容

가. 同盟國의 工業所有權分野에서 立法措置를 취할 것을 要求하거나 동맹국이 이를 許容하라는 규정

○ 동맹국에게 優先權에 관한 詳細한 規定을 해줄 것을 要求하거나 동맹국이 이를 허용해야 할 규정(4條)

○ 強制實施權設定에 관한 立法措置의 要求(5條A)

○ 料金不納으로 消滅된 特許權의 回復에 대한 立法措置要求(5條 2)

○ 善意的 第三者의 類似商標使用에 대한 禁止請求權期間設定에 대한 허용(6條 3)

○ 越權代理人등에 대한 商標權者의 權利行使期間에 관한 規定許容(6條 6)

○ 不正競爭으로부터 동맹국 국민의 保護(10條 2)

1. 파리協約加入國 : 88個國(78. 1. 1現在)

※ 表는 우리나라와 協力關係에 있음

國 名	等 級	加入日字
Algeria	VI	1966. 3. 1
※Argentina	IV	1967. 2. 10
※Australia	IV	1925. 10. 10
※Austria	IV	1909. 1. 1
Bahamas	VII	1973. 7. 10
※Belgium	IV	1884. 7. 7
※Benin	VII	1967. 1. 10
Brazil	IV	1884. 7. 7
Bulgaria	VI	1921. 6. 13
Burundi	VII	1977. 9. 3

※Cameroon	VII	1964. 5. 10
※Canada	II	1925. 6. 12
Central African Empire	VI	1963. 11. 19
Chad	VII	1963. 11. 19
Congo	VII	1963. 9. 2
Cuba	VI	1904. 11. 17
Cyprus	VI	1966. 1. 17
Czechoslovakia	IV	1919. 10. 5
※Denmark	IV	1894. 10. 1
Dominican Republic	VI	1890. 7. 11
Egypt	VI	1951. 7. 1
Finland	IV	1921. 9. 20
※France	I	1884. 7. 7
Gabon	VII	1964. 2. 29
German, Democratic Republic of	III	1903. 5. 1
German, Federal Republic of	I	1903. 5. 1
Ghana	VII	1976. 9. 28
※Greece	V	1924. 10. 2
Haiti	VI	1958. 7. 1
Holy See	VI	1960. 9. 29
Hungary	V	1909. 1. 1
Iceland	VI	1962. 5. 5
※Indonesia	IV	1950. 12. 24
※Iran	IV	1950. 12. 16
Iraq	IV	1976. 1. 24
Eire	IV	1925. 12. 4
Israel	VI	1950. 3. 24
※Italy	III	1884. 7. 7
※Ivory Coast	VII	1963. 10. 23
※Japan	I	1899. 7. 15
Jordan	VII	1972. 7. 17
Kenya	VI	1965. 6. 14
Lebanon	VI	1924. 9. 1
Libyan Arab Jamahiriya	VI	1976. 9. 28
※Liechtenstein	VII	1933. 7. 14

※Luxembourg	VII	1922. 6. 30
Madagascar	VII	1963. 12. 21
Malawi	VII	1964. 7. 6
Malta	VII	1967. 10. 20
Mautania	VII	1965. 4. 11
Mauritius	VII	1976. 9. 24
Mexico	IV	1903. 9. 7
Manaco	VII	1956. 4. 29
Morocco	VI	1917. 7. 30
※Netherland	III	1884. 7. 7
※New Zealand	V	1931. 7. 29
Niger	VII	1964. 7. 5
Nigeria	VI	1963. 9. 2
※Norway	IV	1885. 7. 1
Philippines	VI	1965. 9. 27
Poland	III	1919. 11. 10
Portugal	IV	1884. 7. 7
Romania	IV	1920. 10. 6
San Marino	VI	1960. 3. 4
※Senegal	VII	1963. 12. 21
※South Africa	IV	1947. 12. 1
Southern Rhodesia	VI	1965. 4. 6
Soviet Union	I	1965. 7. 1
※Spain	IV	1884. 7. 7
Srilanka	VI	1952. 12. 29
※Surinam	VII	1975. 11. 25
※Sweden	III	1885. 7. 1
※Switzerland	III	1884. 7. 7
Syria	VI	1924. 9. 1
Tanzania	VI	1963. 6. 16
Togo	VIII	1967. 9. 10
Trinidad and Tobago	VI	1964. 8. 1
Tunisia	VI	1884. 7. 7
Turkey	VI	1925. 10. 10
Uganda	VII	1965. 6. 14
※United Kingdom	I	1884. 7. 7
※ United States of America	I	1887. 5. 30
Upper Volta	VII	1963. 11. 19
Uruguay	VI	1967. 3. 18
Viet Nam	VI	1956. 12. 8
Yugoslavia	IV	1921. 2. 26
Zaire	VI	1975. 1. 31
Zambia	VI	1965. 4. 6
合計 88個國		

※表 : 28個國

2. 우리나라와 工業所有權에 관한 門戶開放現況

○表는 協定國
△表는 互惠主義國

國 別	權 利 內 容				備 考
	特許	實用	意匠	商標	
1. 美 國	○	○	○	○	條約 優先權認定
2. 西 獨	△			○	
3. 日 本	○	○		○	
4. 덴마크	○			○	
5. 노르웨이	○		○	○	
6. 이탈리아	○			○	
7. 프랑스	○			○	
8. 벨지움	○	○	○	○	
9. 네덜란드	○		△	○	
10. 自由中國	○	○	○	○	
11. 아르헨티나	○	○	○	○	
12. 그리스	○			○	
13. 스페인	○	○	○	○	優先權認定國
14. 이 란	○			○	
15. 英 國	○	○	○	○	優先權認定國
16. 스위스	○			○	優先權認定國
17. 캐나다	○	○	○	○	優先權認定國
18. 파나마	△			△	
19. 오스트렐리아	△		△	△	
20. 香 港	△		△	△	
21. 오스트리아	△			△	
22. 스웨덴	△		△	△	
23. 싱가포르	△		△	△	
24. 南阿聯邦	△		△	△	
25. 룩셈부르크	△	△	△	△	
26. 印 度	△	△	△	△	
27. 리히텐시타인	△		△	△	
28. 칠 레	△	△	△	△	
29. 페 루	△	△	△	△	
30. 세네갈	△	△	△	△	
31. 카메룬	△	△	△	△	
32. 아이보리코스트	△	△	△	△	
33. 베냉	△	△	△	△	
34. 방글라데시	△	△	△	△	
35. 베네수엘라	△	△	△	△	
36. 수리남	△	△	△	△	
37. 인도네시아	△			△	
38. 리베리아	△	△	△	△	
39. 바레인	△	△	△	△	
40. 뉴질랜드	△			△	

計 40個國(協定 17國, 互惠主義 23國)

-44면에 계속-

圖書 海外研修報告書 Catalogue 등도 整理保管하여 언젠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5) 特許教育

特許教育에 있어서는 특허위원의 교육은 特許協會等 外部團體에서 實施하는 研修教育에 參與하여 委員의 資質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社內特許教育을 실시하여 全從業員에게 特許知識을 갖게 하고 發明意慾을 고취시키며 新入社員에 대해서는 新入社員教育時 特許課에서 教材를 만들어 工業所有權에 대한 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9. 從業員의 特許意識 提高對策

(1) 특허에 대한 重要性을 인식시키고 發明意慾을 提高하기 위하여 1979年 1月부터 職務發明補償規程을 確定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出願者에게 이미 出願補償金을 支給한바 있다. 특허가 登錄되면 登錄補償金과 함께 社長表彰狀이 授與되므로 人事考課에도 반영하게 되어 있어 從業員의 사기양양에도 큰 效果가 기대된다.

(2) 專門辨理士를 招請하여 年 1回 以上 管理職社員을 對象으로 特別講演을 통하여 特許制度의 必要性을 인식시키고 있으며

(3) 內容이 좋고 實施可能한 外國의 특허를 每月

1件씩 社報를 통하여 紹介함으로써 實用化를 꾀하고 있다.

(4) 其外에 특허과에서는 從業員의 특허에 관한 相談도 하고 있어 個人的인 의문사항을 解決하여 주고 있다.

10. 其他

특허과에서는 其他업무로 技術職社員들의 課題報告發表大會, 海外研修內容報告會를 年 1回 以上 開催하고 技術開發準備金制度를 最大限 活用하여 研究開發意慾을 提高하고 있다.

11. 今後計劃

特許業務를 보다 積極的으로 運用해 나가기 위하여 電氣, 化工, 金屬部門別로 Engineer를 確保하고 蒐集된 最新特許資料를 分析하여 定期的으로 現場製造部署 또는 研究開發部署에서 說明會를 開催하여 特許情報를 傳達하고 이들의 有效適切한 活用을 꾀하고자 한다.

또한 特許抄錄誌를 作成하여 本社 및 兩工場에 配布할 예정으로 現在 日本實用新案公開公報를 要約하여 冊子化를 準備中에 있다.

-18面에서 계속-

- 부정경쟁에 관한 違法行爲에 대한 規制 및 法律上救濟手段要求(10條 3)
 - 工業所有權에 관한 國際博覽會 展示品에 대한 假保護(11條)
 - 中央資料館 設置 및 特許公報發行 要求(11條)
 - 同盟國 憲法에 의한 本協約 適用에 필요한 조치요구(25條)
- 나. 工業所有權分野에서 他人의 權利義務에 관하여 國內法令을 適用할 것을 明하는 규정
- 內國民待遇(2條)
 - 不法으로 商標, 商號를 붙인 商品의 押留(9條)
- 다. 個人的 권리 및 의무에 관한 實體規定
- 工業所有權保護對象(1條)의 最廣義로 解釋
 - 優先權(4條)
- 特許, 實用: 1年
意匠, 商標: 6個月

- 特許獨立의 原則(4條 2)
- 發明者의 人格權(4條 3)
- 특허의 拒絕 또는 無效可能性에 대한 制限(4條 4)
- 특허의 強制實施 (5條 A)
- 權利存續料金の 納入猶豫(5條 2)
- 船舶 航空機, 車輛의 侵害責任免除(5條 3)
- 특허된 製造方法에 의하여 제조된 物品의 輸入(5條 4)
- 商標登錄의 條件과 登錄商標의 獨立(6條)
- 商標의 移轉(6條 4)
- 外國에 登錄된 商標의 保護(6條 5)
- 代理人등에 의한 商標등록에 대한 商標權者의 권리(6條 7)
- 商標를 使用하는 商品의 性質(6條)
- 團體商標의 保護(7條 2)
- 商標의 보호(8條)
- 虛偽의 原產地表示에 대하여 訴追할 수 있는 利害關係人(10條)
- 不正競爭行爲의 指定

<完>